

경호학의 발전을 위한 대통령경호실 특별채용 확대방안

The Ways to Expand Special Employment for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to Develop Security Science

Tae Min Kim*

Department of Security and Secretarial Science, Kyungnam University, 7 Kyungnamdaehak-ro, Masanhappo-gu, Changwon, Korea

Abstract

Any harm on important figures on the nation such as the President is a critical issue that can cause national crisis. To secure safety of important figure of the nation,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erforms the security work in Korea. Currently, many students majoring in what is related with security science want to be hired in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and are preparing for that. However, only a few students are employed in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actually. If a futuristic vision is not presented to the students, it would be a factor to drive breakaway and reduction of the security-majoring students, which would considerably influence on the rate of employment and enrolled students reinforcement. As academic population drops recently, the government spreads structural reform to countermeasure against this. Especially, the rate of employment and enrolled students reinforcement work as a main index in assessment and structural reform of universities. Unless such virtual problems were not solved, department of security science would be depressed and it would be hard to expect development of security science. Graduates of the development of security science are those who are prepared as potential human resources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To develop security service, therefore, a special employment system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should be expanded, and a system to especially employ the graduates of Security Science should be introduced.

Key words: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special employment, security science

* Tel. +82-55-249-2551 E-mail. tmlkim@kyungnam.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an. 13, 2015 / Revised: Feb. 10, 2015 / Accepted: Feb. 20, 2015

국문초록

대통령과 같은 국가요인에 대한 위해는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요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경호 관련학과의 많은 학생들은 대통령경호실에 채용되기를 희망하고 또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경호실에 채용되는 경호학과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생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경호학전공자들의 이탈과 감소를 조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취업률뿐만 아니라 재학생충원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구조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서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은 주요 지표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호학과의 침체는 물론 경호학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호학과 출신자들은 대통령경호실의 잠재적 인적자원으로서 준비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경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실 특별채용제도를 확대해야 하고, 특히 경호학과 특별채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제어: 대통령경호실, 특별채용, 경호학

1. 서론

미국은 각종 재난 및 안전, 테러리즘과 범죄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¹⁾를 창설하는 등 위기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통령 등 주요 요인에 대한 위해는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그에 대한 경호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같은 주요 요인은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거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두고 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 등을 경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호학은 학문적으로 1996년 용인대학교에 경호학과가 최초로 개설된 이래로 여러 대학에 경호학관련 많은 학과들이 설치되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경호에 관한 폭넓은 학문적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 경호학과의 미래 비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경호관련학과 수는 감소추세²⁾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구조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교육의 역량을 제고하고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며,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및 입학자원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의 위기를 완화시키고자 하고 있

1) 미국은 본토에 대한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3년 3월 국토안보부(DHS)를 창설하였다. 22개 행정부처와 유관기관에 분산되어있던 국토안보와 대테러리즘 업무 관련조직과 미국 대통령 경호기관인 비밀경호국(USSS) 및 연방위기관리청(FEMA) 등을 흡수·통합하여 2003년 3월 1일 '국토안보부(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창설한 것이다(윤태영, 2012: 169).

2) 김태민(2011: 144; 2013a: 134)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 대학에 경호학과(학과나 전공명에 '경호'용어 사용)는 2011년 59개에서 2013년 47개교(4년제대학교 18개, 전문대학 29개)로 감소되었다.

다³⁾. 앞서 2014년 8월 29일에는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결과를 발표⁴⁾ 하였다. 최근 대학의 문화가 학문탐구보다는 취업준비를 위해 준비하는 곳으로 변모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서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은 주요 지표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호 관련학과 학생들의 비전 및 장래 진로설정과 관련하여 많은 학생들은 대통령경호실에 채용되기를 희망하고 또 이를 위해 준비 및 학업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경호실에 채용되는 학생은 극소수 몇몇 대학에 극소수 인원만이 채용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경호실의 채용방식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호학과의 침체는 물론 경호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국가 및 기업의 핵심 경쟁원천이 물적자원에서 인적자원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양 위주의 ‘인력’ 개념에서 질 위주의 ‘인적자원’ 개념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급 인적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국가와 기업 모두 존립에 위협을 받게 된다(김은환·이갑수, 2001: 1). 실적주의 하에서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 수요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행하기가 부적당하다거나, 공개경쟁채용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특수분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특별한 방법, 즉 특별채용으로 필요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이영남, 2014: 184). 대통령경호실은 충신지통(忠信知通)을 바탕으로 한 균형감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에서는 경호실이 원하는 인재의 면모를 밝히고 있는데 인재상은 ‘냉철한 판단력과 두뇌 순발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있다. 경호학과 출신자들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충만되어 있고, 자기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경호의 이론 및 실무능력을 갖추는 등 대통령경호실의 잠재적 인적자원으로서 준비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경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실 특별채용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특히 경호학과 특별채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인접학문인 경찰행정학과 출신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제도를 참고하여 경호학과 출신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실의 특별채용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김태민(2013a: 146)은 경호학의 정립을 위한 선결과제로 대통령경호실의 역할 확대를 제기하였고, 이를 위해 대통령경호실장 주관 경호 관련학회 및 학과장 간담회의 정례화 등을 추진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경호학과 출신자의 대통령경호실 특별채용을 건의하는 등 그 동안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대통령경호실의 임용 및 채용제도에 대해 고찰함은 물론 그동안 학술대회 등을 통해 선언적으로 제안해왔던 부분을 논문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3) 교육부는 2014년 12월 24일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교육부, 2014b).

4) 전체 334개 대학(대학 197, 전문대 137) 중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9교, 전문대 10교)에 지정되었고, 이중 7개교(대학 4교, 전문대 3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 대학에 동시 지정되었다(교육부, 2014a).

II. 대통령경호실과 경호학

1. 대통령경호실의 태생과 발전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된 이래 참여정부까지 공경호에 대한 경호직무는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 등에 대해서는 경호실이 1차적으로 담당하고, 그 외 중요인사들에 대한 경호직무는 일반경찰(경찰청)이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호체계 및 조직은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특별행정관청인 ‘대통령경호실’과 일반경찰행정기관인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홍정선, 2007: 109).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한 개인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적인 안전성유지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은 1963년 창설 이후 많은 변화와 격동기를 거치면서 경호 전문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양재열, 2012: 213). 1963년 12월 14일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공포되고, 12월 17일에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되었다. 2000년에는 경호직 공무원 신분을 별정직에서 특정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치적 중립 및 신분보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전환되기도 하였으며, 대통령경호실법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경호처에서 다시 대통령경호실로 독립되었고, 대통령경호실장은 장관급으로 승격되었다. 또 경호공무원은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되기도 했다.

현재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그 밖에 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의 요인(要人)으로 정하고 있다.

2. 대통령경호실 채용의 내용⁵⁾

2014년 대통령경호실 경호분야의 특정직 7급(경호주사보) 채용은 2014년 8월 1일~9월 12일 공고되고 9월12일까지 원수접수가 이루어졌다. 응시자격과 시험전형 내용은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특정직7급은 만30세 이하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이고, 신장과 시력에 제한이 있다. 또 신체기준은 2015년 공채부터 자격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영어능력은 공인영어 기준 점수 이상 보유자라야 한다. 시험전형은 1~3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1차 시험은 필기시험, 2차 시험은 인성검사,

5) 대통령경호실 공고 제2014-03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체력검정, 일반면접으로 이루어졌다. 3차 시험단계에서는 신체검사, 논술시험,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다.

<표 1> 2014년 경호분야 특정직7급 응시자격 내용

구분	내용
임용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학력/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음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년도 기준 만30세 이하자('83. 1. 1 이후 출생자)
병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포함)
신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신이 건강한 자로 신장/시력 기준 적합자 -신장: 男 171cm 이상, 女 159cm 이상 - 시력: 나안 0.8 이상(남녀 공통) * 2015년도 공채부터 신체 자격기준 강화 예정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영어 기준 점수 이상 보유자(2012. 10. 1 이후 응시한 성적표) - 기준(택일): 토익700, 토픽625, 토픽(PBT530,CBT197,IBT71) 토픽스피킹 레벨5, MATE스피킹 레벨4, OPIc 레벨IM3 이상
가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가점)

※ 자료: 대통령경호실 공고 제2014-03호에서 수정 및 재편집

<표 2> 2014년 경호분야 특정직7급 시험전형 내용

구분	구분	내용
원서접수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격기준 적격여부
1차시험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상식(100문항):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정치, 경제, 과학, 법률, 경호학
2차시험	인성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특성 및 태도 진단검사
	체력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종 5개항목 - 근지구력: 윗몸일으키기(1분), 근력: 배(背)근력, 손발력: 제자리 멀리뛰기, 민첩성: 10m왕복달리기, 심폐지구력: 달리기(남:2000m, 여:1200m)
	일반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 및 개인역량 등 평가(영어면접 포함)
3차시험	신체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격 및 질병검사
	논술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관 및 가치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 부여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방식, 의사소통, 직무적합성 등 평가

※ 자료: 대통령경호실 공고 제2014-03호에서 수정 및 재편집

3. 대학의 환경변화와 경호학

1) 대학의 환경 변화: 구조개혁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에 있어 많은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력의 원천은 물질 자원과 육체노동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며 이에 지식 창출·활용의 주체인 대학의 행동양식과 역할에 있어 많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민철구 외, 2004: 7). 학령인구 및 입학자원 급감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은 현재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학 평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를 통해 정원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대폭적 입학정원 감축을 시키고 있다. 또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 1월 29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하였다. 평가방안의 특징은 정량·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대학의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이다. 여기에는 <표 3>과 같이 일반대학 1단계 지표로서 ‘교육성과’ 15% 평가항목 중 ‘학생 충원율’ 8%와 ‘졸업생 취업률’ 5%가 포함된다. 전문대학은 ‘교육성과’ 20% 평가항목 중 ‘학생 충원율’ 8%와 ‘졸업생 취업률’ 10%가 포함되고 있다(교육부, 2014b).

<표 3> 일반대학 평가: 1단계 지표

항목(60)	평가 지표	평가 요소
교육여건(18)		
학사관리(12)		
학생지원(15)		
교육성과(15)	학생 충원율(8)(수도권/지방 구분)	- 신입생 충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수도권/지방 구분 평가) - 재학생 충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수도권/지방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학생 충원율의 개선 정도 고려
	졸업생 취업률(5)(권역 구분)	- 졸업생 취업률을 정량적으로 평가(계열별·성비 고려 / 권역별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졸업생 취업률의 개선 정도 고려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 자료: 교육부(2014b)에서 수정 및 재편집

대학기관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입학부터 진로설정과 취업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 특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준비생(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졸업을 미루는 졸업유예 제도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대학이 전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 경호학 발전 및 현황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2). 경호학은 이러한 경호의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호학은 사회 제 현상과 경호업무와의 제 관계에 있어서의 일반법칙과 원리를 규명하고 합리적인 수단과 과학적인 기술 및 그 적용을 탐구하는 경호 학술적 사회과학이다(김두현, 2011: 51). 경호학은

과학의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경호에 관한 체계적 지식과 학문으로 경호에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연구하는 종합적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태민, 2011: 140). 1996년 용인대학교에 ‘경호’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경호학과가 신설된 이후, <표 4>와 같이 2013년 기준 경호학과(학과 및 전공명 이 ‘경호’용어가 포함된 학과)는 47개교에 이르고 있다. 또 대학원과정(석·박사과정)에도 경호학이 신설되어 경호학 박사, 경호보안(안전)학 박사들이 배출되고 있다(김태민b, 2013: 172).

<표 4> 경호학과 설치 현황

구분	학교 및 학과(전공)명
대학	경기대 경호보안학과, 경남대 경호비서학과, 경운대 경호학부, 남부대 무도경호학과, 대구예술대 경호보안학과, 동서대 경호전공, 동아대 경찰경호학과, 선문대 무도경호학과, 세한대 경호무도학부, 용인대 경호학과, 우석대 경호비서학과, 중부대 경찰경호학과, 초당대 경호무도전공, 한서대 경호비서학과, 한중대 무술경호전공, 호남대 태권도경호학과, 호서대 경호전공, 호원대 무도경호학부
전문대학	경남정보대 경찰경호행정과, 경북전문대 경찰경호행정계열, 경산1대 경호태권도경영과, 구미대 경호스포츠과, 국제대 경찰경호계열, 김천과학대 경호무도과, 대경대 경호보안과, 대구과학대 경호무도과, 동강대 경찰경호학부, 동서울대 경호스포츠과, 동의과학대 경호보안전공, 백석문화대 경찰경호학부, 부산경상대 경찰·경호행정과, 부산과학기술대 경호보안전공, 서해대 경찰경호스포츠과, 세경대 경찰경호과,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과, 여주대 경찰경호과, 영남외국어대 경찰경호과, 우송정보대 경호·법무과, 원광보건대 경호스포츠과, 전남과학대 경호보안전공, 전남도립대 경찰경호과, 전주기전대 경찰경호과, 제주관광대 경호전공, 청암대 경찰경호과, 충북보건과학대 경호무도과, 포항대 경호스포츠전공, 혜천대 경찰경호과

※ 자료: 김태민(2013b: 172-174)에서 수정 및 재편집(2013년 5월 기준 대학알리미자료를 기초로 전국 대학 홈페이지 전수조사. 경호학과는 학과 및 전공명에 ‘경호’용어 포함된 학과); 신상민·김태민(2014: 116).

III. 경찰행정학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제도

1. 경찰공무원 채용 제도

경찰인사관리는 경찰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활동을 의미하며, 3대 중요변수는 임용, 교육훈련 등의 능력발전, 보수와 후생복지를 포함하는 사기관리이다(이영남, 2014: 171; 조철욱, 2012: 340). 경찰공무원의 임용은 임용권자와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임용에 있어 공무원의 동의는 절대적 요건이 되고 또한 임용거부의 처분성이 긍정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임명행위는 무효가 된다(박윤훈, 2005: 223). 경찰공무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실적주의로서 공개채용시험과 기타 특별 자격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특별채용으로 이루어진다(조철욱, 2012: 354). 공개채용에는 순경공채(일반순경, 101경비단, 여경)와 간부후보생채용, 그리고 경찰특공대요원(순경)이 있으며, 특별채용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전문지식, 연구실적, 학위 등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시출신자인 경정특채, 학사경장(조사·외

사요원),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순경특채, 사이버범죄수사전문요원, 대테러 여경특공대원 등이 있다. 또한 국립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위임용제도가 있다(신현기, 2014: 106).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법적 근거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에 두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에 따라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특별채용")할 수 있다.

1.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경찰공무원법 §8).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의 요건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경찰공무원임용령 §16②).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로서 순경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요구일 현재 중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특별채용될 수 없다(경찰공무원임용령 §16③). 이와 같은 특별채용(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3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2.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인정될 수 있는 과목)를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군인으로서 2년이상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투경찰순경중 특경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3년이상 5년이하(전투경찰대에서 근무할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전투경찰대 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 근무할 조건으로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보안공작업무와 관련있는 자를 보안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지식⁸⁾을 가진 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경찰공무원임용령 §16④).

2. 경찰공무원 및 경찰학과 특별채용

경찰공무원의 자질 향상은 급여 및 후생, 교육훈련 등 여러 투입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경찰인사의 첫 단계인 인적 자원을 흡수하는 채용 과정에서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모집하고, 그 중에서 적절한 조건을 갖춘 적격자를 채용해야 한다(이영남, 2014: 181). 현대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같은 패러다임을 지향함에 따라 경찰인적자원의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박한호, 2013: 187).

2014년 경찰공무원 특채모집의 규모는 19회에 1,398명이며, 이 중 경찰학과 특채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280명이고 한 해 동안 560명이었다. 2015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살펴보면 공채와 경찰행정학과·전의경 특채모집의 규모는 <표 5>와 같이 총 7,626명이며, 이 중 경찰학과 특채는 1차와 3차에서 각 280명, 한 해 동안 56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기타 특채는 변호사, 항공, 경찰특공대, 총포화

6)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체포술(무도·사격 포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학, 경찰학,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의사론,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연구 방법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정책)론, 소년범죄론, 자치경찰론, 국가정보학, 사회병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1의2). 유사과목 인정기준은 전국 4년제 경찰행정 관련학과의 교과과정 중 전공·기초과목 모두 인정되고(전공·기초필수, 전공·기초선택). 편입생의 경우 前籍대학 이수 전공과목 중 동임용령 별표1의2에 규정된 과목에 한해 인정한다.

7)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01경비단 및 22경찰경호대를 말한다(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34③).

8) 전문지식의 범위는 전문특기 분야의 기능 기타 특수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에 한정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대공공작·대공신문분야에 있어서 채용예정직급이 경사 이하인 경우에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본다(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34④).

약, 정보화장비, 범죄분석, 사이버수사, 학교전담, 무도, 교통공학, 과학수사, 지능범죄, 외사 분야에 602명 채용계획이다.

<표 5> 2015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채, 경찰행정학과/전의경 특채(7,626명)

분 야		인원(명)		채용공고	필기시험
1차	순경 공채	男	2,454	1.6(화)	2.14(토)
		女	346		
	경찰행정 특채		280		
	101 경비단		120		
소계				3,200명	
2차	순경 공채	男	1,449	4.28(화)	5.30(토)
		女	207		
	전·의경 특채		370		
	소계				
3차	순경 공채	男	1,753	8.25(화)	9.19(토)
		女	247		
	경찰행정 특채		280		
	101 경비단		120		
소계				2,400명	

※ 자료: 사이버경찰청(<http://gosi.police.go.kr/>)에서 수정 및 재편집. 2014.12.31.검색.

201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경찰청 공고 제2015-2호)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표 6>과 같이 일반공채 연령은 18세 이상~40세 이하이고 학력제한은 없다.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라야 하고 신체조건(체격·시력·색신·청력·혈압)에 부합해야 한다.

<표 6> 201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

구분	응시자격요건
연 령	· 일반공채: 18세 이상~40세 이하(1974. 1. 1~1997. 12. 31. 출생자) · 경찰행정학과특채: 20세 이상~40세 이하(1974. 1. 1~1995.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학 력	· 일반공채: 학력제한 없음 · 경찰행정학과특채: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자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5. 4. 5까지 전역예정자)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 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표 6> 201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계속)

구분	응시자격요건
신체조건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 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자료: 경찰청 공고 제2015-2호에서 수정 및 재편집

채용시험의 방법은 <표 7>과 같이 필기시험, 서류전형,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기시험은 일반공채의 경우 필수2과목(한국사, 영어)과 선택3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 이루어져있고,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다. 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을 하는 신체검사와 5개 종목(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으로 이루어진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표 7> 201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시험방법

구분	내용
필기시험	· 일반공채: 필수2과목(한국사, 영어) 선택3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 경찰행정학과특채: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체력검사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5개 종목)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자료: 경찰청 공고 제2015-2호에서 수정 및 재편집

합격자 결정은 <표 8>과 같이 필기시험의 경우 일반공채는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체력시험은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서류전형으로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한다. 면접시험은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지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된다(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36).

<표 8> 201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

시험구분	결정방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필기시험	· 일반공채: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경찰행정학과특채: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체력시험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시 불합격
적성검사	· 면접시험에 반영
서류전형(경찰행정학과 특채)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승·불 결정(경행과 특채에 한함)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6조)
최종합격자	· 필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결정

※ 자료: 경찰청 공고 제2015-2호에서 수정 및 재편집

201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일반공채와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총 3,200명을 채용하며 이 중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280명이다.

<표 9>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 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특채 자격요건	연령: 20세이상 40세 이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

※ 자료: 사이버경찰청(<http://gosi.police.go.kr/>)에서 수정 및 재편집. 2014.12.31.검색.

<표 10> 201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지역별 채용 규모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3,200	828	344	158	122	90	112	58	383	148	106	112	90	140	188	250	71
일반공채	남 2,454	588	276	132	96	64	79	36	330	116	74	80	58	108	146	208	63
경찰행정학과특채	여 346	78	50	8	8	8	15	4	11	20	20	20	20	20	30	30	4
101경비단	280	42	18	18	18	18	18	18	42	12	12	12	12	12	12	12	4
	120	120															

※ 자료: 경찰청 공고 제2015-2호에서 수정 및 재편집

IV. 경호 관련학과의 대통령경호실 특별채용 확대 방안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상 채용제도

대통령경호실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

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6). 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은 <표 11>과 같다.

<표 11> 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

계급	직급의 명칭	계급	직급의 명칭
1급	관리관	6급	경호주사
2급	경호이사관	7급	경호주사보
3급	경호부이사관	8급	경호서기
4급	경호서기관	9급	경호서기보
5급	경호사무관		

※ 자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수정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과전·직위해제·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실장이 행한다. 대통령경호실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전술한 사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7).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8).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임용은 학력·자격·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통령경호실장은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 대상자의 건강 상태, 사상의 건전성, 품행 및 학력·자격·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용 대상자에게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실장이 정한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8).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통령경호실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및 준용을 받으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사권은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양재열, 2012: 217).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경험·기술이 있는 자를 1급 또는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4.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 5.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호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직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②).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비서·공보·의무·운전·사범·교관·사진 등의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③).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이를 직급별로 실시하고 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대통령경호실장이 실시하며, 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은 <표 12>와 같다.

별정직·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과하지 아니한다. 대통령경호실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는 과목당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하며,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한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신체검사 및 체력검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기시험·지능검사·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경호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대상이 되는 계급은 5급·7급 및 9급으로 하고,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대상이 되는 계급은 9급으로 한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체력검정·지능검사·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시험에 있어 대통령경호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채용에 대한 내용은 특정직 7급, 일반직 9급, 별정직 해당직급으로 구분하여 <표 13>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표 12> 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표

계급	채용구분		시험과목
5급 이상	공채	제1차(객관식)	필수 헌법, 한국사, 영어
		제2차(주관식)	필수 경호경비학, 행정학, 행정법
	선택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경영학, 정치학, 경제학, 재정학, 사회학, 심리학, 정보학, 체육학, 통신공학, 전자공학, 정보공학, 제2외국어(일어, 불어, 독어, 중국어, 노어, 스페인어, 아랍어)중 2과목		
	특채·승진	제1차(객관식)	필수 영어
제2차(주관식)		필수 경호경비학	
	선택 행정법, 행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경영학, 정치학, 경제학, 재정학, 사회학, 심리학, 정보학, 체육학, 통신공학, 전자공학, 정보공학, 제2외국어(일어, 불어, 독어, 중국어, 노어, 스페인어, 아랍어)중 1과목		
6·7급	공채·특채	필수	일반상식, 영어
8·9급	공채·특채	필수	일반상식, 영어

※ 자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표 13> 대통령경호실 채용안내

구분	특정직 7급	일반직 9급	별정직 해당직급
채용분야	경호(경호 I), 정보통신(경호 II)	시설, 관리, 운전, 정비, 사무 등	비서, 공보, 의무, 사범, 교관, 사진 등
채용시기	고정시기 없음 (채용전형 1개월전 공고)	충원필요 시	충원필요 시
응시자격	- 만30세 이하자 - 병역필한자(면제자포함) ◎ 경호 I - 신장 171cm이상(여성 159cm) - 나안시력 0.8 이상자 ◎ 경호 II - 신장 168cm이상(여성 156cm) - 교정시력 1.0 이상자	- 만18세이상 40세이하자 -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영양사, 제1종운전면허, 워드프로세서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부기2·3급 등) - 신장, 시력 제한 없음	관련 전문분야 경력 및 자격소유자 신장, 시력 제한 없음
시험절차	- 서류전형, 필기시험, 체력검정, 인성검사, 면접시험, 신체검사, 논술시험, 신원조사	-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인성검사, 신체검사, 면접시험, 신원조사	-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인성검사, 신체검사, 면접시험, 신원조사
필기시험	국가공무원 7급 수준의 일반상식	해당분야(생략가능)	해당분야(생략가능)
실기평가		해당분야	해당분야

※ 자료: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https://www.pss.go.kr>)에서 수정 및 재편집. 2014.12.8.검색.

2. 대통령경호실 특별채용 확대 제안: 경호학과 특별채용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뿐만 아니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

인력·예산 또는 근무지역의 특수성 등의 문제로 공개채용 절차로는 채용이 어려운 특정 직위에 소수 인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특정 직위에 임용하고자 할 때 비교적 채용 절차가 간편한 특별채용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공개채용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임용구조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경찰대학 졸업자, 경찰행정학과 졸업자 등이다(이영남, 2014: 184).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⁹⁾ - 표준 및 활용 패키지(소분류: 경비·경호, 세분류: 경호) 자료에 따르면 경호·경비영역의 인력배출 현황은 연 2,000여명이 대학기관의 경호 관련학과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경호실은 훈(訓)은 ‘하나된 충성(전직원이 인화단결하여 오직 한 마음으로 경호 임무에 매진, 국가와 민족을 대하는 경호관의 기본적인 정신자세), 영원한 명예(경호임무는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하여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는 역사의식, 희생과 봉사의 자세를 바탕으로 하는 대통령경호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긍지와 전문성)’이다. 또 충성(loyalty), 자기통제(self-control), 통합(integration), 상황판단(judgement), 용기(courage)를 핵심가치로 두고 있다. 경호학과 출신자들은 이러한 정신적인 교육을 받은 인적 자원들이다. 또한 경호의 전문적 이론과 실무능력을 학습하고 있다. 경호 직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호조직도 독자성과 특수성을 가지게 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특정분야가 있다면 관련 직위 내지 직무에 적합한 우수 경호전문인력을 채용하는 특별채용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경호실은 특별채용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도 현행 공개채용제도를 보완하여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경호학과 졸업자에 대한 특별채용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안전 중시 정부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본가치로 정부운영을 혁신하는 정부 3.0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경찰청브리핑, 2013.5). 경찰청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학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치안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그 예로는 ①2011.5.19., 조현오 전경찰청장의 경찰 관련 학회 임원진 초청 간담회 - 간담회(5. 19)에서 제안된 정책제안 15개의 제안을 정책추진에 반영 ②2011.11.3., 경찰청장의 경찰관련 학회 임원진 초청 간담회, ③2012.8.21., 김기용 전경찰청장의警·學 간담회, ④2013.5.23., 경찰청장의 경찰 관련 학회 간담회 - 간담회(5. 23)에서 제안된 정책제안 40건을 소관 기능에서 검토한 결과 27개의 제안을 정책추진에 반영 등). 경찰청은 警·學 간담회에서는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경찰청과 경찰행정학과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경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9)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고용노동부 외, 2014: 3).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앞으로도 경찰청은 전국 대학 경찰행정학과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요 치안정책 추진시 학계 전문가의 식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찰행정학과 교수진과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경찰청브리핑, 2012.8). 대통령경호실도 관학협력시스템 마련을 통하여 경호학의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요인에 대한 안전한 경호임무 수행은 물론 경호학의 발전, 경호산업의 발전, 그리고 경호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실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경호실 경호학과 특별채용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실의 역할이 핵심이다. 대통령경호실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다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경호학과 특별채용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표 14>와 같이 제안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는 방법이다.

“2년제 이상 대학의 경호학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호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4의 경호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호주사보 이하의 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더불어 이와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경호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신설하면 된다. 경호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경호학의 영역 및 경호학과의 대표 교과목과 NCS 능력단위를 참조하여 <표 15>와 같이 제안한다.

<표 1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경찰행정학과 특채	경호학과 특채(안)
<p>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p> <p>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③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p> <p>2.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신규채용)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경험·기술이 있는 자를 1급 또는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호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 한 직급의 직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p>③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비서·공보·의무·운전·사범·교관·사진 등의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다.</p> <p>[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6호 신설></p> <p>6. 2년제 이상 대학의 경호학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호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4의 경호학 전공 이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호주사보 이하의 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p> <p><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경호학 전공 이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신설></p>

※ 자료: 관련 법령의 인용 및 개정 제안

대통령경호실 경호학과 특별채용의 직급은 7급(경호주사보) 내지 9급(경호서기보)으로 설정하는 것이 문안할 것으로 판단된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7급으로, 2년제 이상 대학의 졸업자는 9급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구체적 기준과 채용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경호실에서 독자적으로 안을 마련하거나 관학협력시스템을 통해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표 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안)

[별표 4] <신설 2015.?.?.> 경호학 전공 이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0조제2항제6호 관련)
<p>인정과목</p> <p>경호경비기획론, 경호정보론, 경호보안관리론, 의전비서학, 체력육성법, 경호무도, 보안장비실무, 경호사격, 응급구조와 처치, 보안행정론, 경호세미나, 경호학개론, 경호경비산업론, 산업보안학, 경호실무(론), 경호방법론, 안전검측론, 경호종합실습, 경호윤리학, 경호경비법, 법학개론, 경호경비발달사, 테러리즘, 민간경비론, 민간경비실무론, 비교사큐리티제도론, 항공보안론,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민간조사론, 위기관리론, 경호심리학, 경호분석학, 범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대통령경호실장이 인정하는 과목</p>

※ 자료: 경호학의 영역 및 경호학과의 대표 교과목과 NCS 능력단위를 참조하여 제안

<표 16> 경호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안)

경호영역 및 능력단위	관련 교과목 현황
경호기획	경호경비기획론, 안전진단실무, 경호기획론
경호정보보안관리	경호정보론, 국가정보학, 경호정보수집분석론
경호안전관리	현대사회와 안전, 경호보안관리론
경호의전	의전비서학
경호체력육성	체력육성법
경호무도	경호무도, 경호제압술, 체포호신술기초, 체포호신술응용, 무도응용, 무도종합실기, 전공무술, 전공실기, 전공실습
경호장비운영	보안장비실무
경호사격	사격술, 사격
경호응급처치	응급구조와 처치, 구급 및 응급처치
경호행정(경호운용지원)	치안행정론, 보안행정론, 조직리더십, 인사관리론, 재무관리론, 정책기획론
경호세미나(경호학연구법)	경호보안세미나, 세미나
경호학개론	경호학개론, 경호보안학전공 및 진로탐색, 경호보안학의 이해
경호산업, 산업보안	시큐리티산업보안론, 경호경비산업론, 산업보안학
경호실무(선발경호, 수행경호, 경호기법/방법)	경호실무(론), 경호방법론, 경호경비기법연구, 경호현장실무, 경호실기, 종합실무훈련, 안전검측론, 선발경호론, 근접경호론
경호경비현장실습	경호인턴실습, 경호보안산업현장실습, 경호종합실습, 경찰경호실습, 동계극기실습, 현장실습
경호윤리	경호윤리학, 경호인성교육
경호 법	경호경비법, 법학개론, 경비업법,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행정법, 민법총칙
경호사	경호경비발달사, 경호발달사
테러리즘	국가안보대테러론, 테러학, 테러리즘, 테러리즘론, 테러 및 범죄학
민간경비	민간경비학, 민간경비론, 민간경비실무론, 비교시큐리티제도론, 시큐리티환경론, 시설경비론, 시설기계경비론, 항공보안론
기계경비	기계경비론,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실습, 전자보안기획 및 설계, 시큐리티시스템기초, 기계경비운용관리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탐정(민간조사)	탐정학, 탐정학개론, 민간조사학, 민간조사론, 민간조사실무
위기관리	위기관리론
경호심리	경호심리학
경호분석연구	경호분석학, 경호사례연구
범죄학	범죄학, 범죄예방론

※ 자료: 5대 경호학과(경기대·경남대·경운대·용인대·중부대)의 홈페이지자료 참고하여 수정 및 재편집

주1: 교과목이 순수 경찰학(범죄예방은 포함)·소방학·어학·체육학·무도학(경호무도는 포함)·군사학·교육학 등은 제외

주2: 위와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대통령경호실장이 인정하는 과목의 유사과목 인정기준은 전국 4년제 경호 관련학과의 교과과정 중 전공·기초과목 모두 인정(전공·기초필수, 전공·기초선택).

V. 결론 및 제언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한다.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성과달성과 협력 공동체를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 대통령경호실은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배치하

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적자원들이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대학기관은 물론 대학생들에게 불어 닥친 환경변화로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대학과 학문은 학생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미래 비전이 불투명하고 없는 것은 경호학전공자들의 이탈과 감소를 조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취업률뿐만 아니라 재학생충원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것은 곧 대학의 위기와 함께 하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경호실은 경호학과 출신자에 대한 특별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경호학’은 그동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의 위기와 함께 비전문제와 결부되어 최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문적으로 경호학에 대한 학문적 위치 정립의 과제, 정체성 확립의 과제, 표준용어 정립의 과제, 민간경호산업과의 연계 과제 등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인식향상의 등이 먼저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경호학 관계인들은 우선 산학연정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호학의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경호학 협의체가 생성되는 것이 단계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첫째, 전국 경호 관련학과 교수들에 의한 ‘경호학 교수 협의회(경호학 교수회)’를 구성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경호학 교수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의는 있어왔지만 의미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둘째, 경호산업과 학문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한국경비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국 경호업체 협의기구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한국경비협회가 ‘경호업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하여 경호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산학관협의체를 조직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학회 중심으로(한국경호경비학회 등) ‘경호학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호학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넷째, 대통령경호실 주도로 관학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경호실은 경호학의 운명을 함께할 주요 기관이다. 그만큼 역할이 지대하다. 상대적으로 볼 때 경찰청은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관련학회 및 교수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시스템을 활성화 하고 있다. 경찰학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대통령경호실의 역할과 대통령경호실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정기적으로 대통령경호실장 주관 전국 경호 관련학회 및 교수 간담회를 추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과 경호학자들을 통해 지식을 모아야 한다. 여기에서 경호학과 출신자들에 대한 대통령경호실 특별채용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경호실 경호학과 특별채용의 직급을 7급(경호주사보) 내지 최소 9급(경호서기보)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기준과 채용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경호실에서 독자적으로 안을 마련하거나 관학협력시스템을 통해 도출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호학 전공자들이 대통령경호실에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주요 경호학과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경호학의 학문적 영역, NCS 등을 참조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표 14>, <표 15>와 같이 제안하였다.

그 동안 필자는 경찰행정학과는 경찰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찰행정학과 특채제도가 있는데, 왜 경호학과는 대통령경호실로 진출할 수 있는 특채제도가 없을까하고 많은 고민을 해왔고, 학술세미

나 등을 통해 제안을 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른 시간 내에 대통령경호실에 경호학과 특별채용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찰공무원법(개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 경찰공무원임용령(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개정 2014. 11. 19, 행정자치부령 제2호).
- 경찰청브리핑. 2012. 8. 경찰청.
- 경찰청브리핑. 2013. 5. 경찰청.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경비협회. 2014.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표준 및 활용 패키지(소분류: 경비·경호, 세분류: 경호).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부. 2014a.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보도자료(2014. 8. 29).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4b.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보도자료(2014. 12. 24). 세종: 교육부.
- 국가공무원법(개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 김두현. 2011. 경호학개론. 서울: 엑스퍼트.
- 김은환, 이갑수. 2001.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긴급과제.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00.
- 김태민. 2011. 경호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치안행정논집. 8(1): 137-164.
- 김태민. 2013a. 경호학의 정립을 위한 선결과제. 한국치안행정학회 춘계학술세미나논문집.
- 김태민. 2013b. 기계경비실습실 설치 및 운영의 발전방향. 치안정책연구. 27(1): 165-203.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개정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4. 12. 8, 대통령령 제25816호).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2015. 1. 6, 대통령령 제26011호).
- 민철구, 송완흡, 현병환. 2004. 지역대학과 출연(연)의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4-16. 서울: 경성문화사.
- 박윤훈. 2005. 행정법강의(상). 서울: 박영사.
- 박한호. 2013.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187-19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신상민, 김태민. 2014. 경호무도의 학문적 발전과 성찰. 대한무도학회지. 16(1): 113-127.
- 신현기. 2014. 경찰인사관리론. 파주: 법문사.

양재열. 2012. 경호학원론. 서울: 박영사.

윤태영. 2012. 미국 국토안보부의 대테러리즘 활동: 임무, 조직 운영체계 및 전략. 한국치안행정논집. 9(3): 163-182.

이영남. 2014. 경찰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조철욱. 2012. 경찰학개론. 서울: 대영문화사.

홍정선. 2007. 경찰행정법. 서울: 박영사.

김태민: 용인대학교에서 경호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2006년 2월), 현재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호학, 민간경비, 위기관리가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련 법제 고찰 및 정책제언(2014)”, “민간경비산업의 실효적 법개정 사안(2013)” 등이 있다(neoguard@daum.net).